



보도시점 (온라인, 지면) 2026. 5. 26.(화) 국무회의 종료시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난임 휴직도 신설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상향한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실제 돌봄이 필요한 때인 초등 의무교육 시기(학령기)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난임 휴직도 신설된다.

지금까지 아이를 갖고자 하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은 오는 6월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난임 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에서 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다만,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 활용이 가능하다.

※(붙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내용

담당 부서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은경 (044-201-8310)
		담당자	사무관	이상필 (044-201-8315)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정석 (044-205-3341)
		담당자	사무관	김정민 (044-205-3347)



구분	현행	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학령 확대</p> <p>※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p> <p>(시행일) 공포한 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u>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u>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u>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u> 연령 및 학령 기준을 상향
<p style="text-align: center;">난임휴직 근거 신설 등</p> <p>※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 등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2 등</p> <p>(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 치료를 위해 <u>질병휴직을 활용</u> ■ 휴직기간은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 치료를 위해 별도의 <u>청원휴직 사유를 신설하여 난임휴직으로 활용</u> ■ 휴직기간은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